

허위매출, POS 조작 가공매출 입력, 권리금 1억2천만원 사안 - 매도인 사기죄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고단898 판결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창업컨설팅 회사)에서 위 E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위 커피숍의 매출전표 등 매출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니까 권리금으로 1억 200만 원을 내고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계약금)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중도금)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7. 24. 7,200만 원(잔금)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B 커피숍 월 매출 현황표
1. B 커피숍 일 매출 현황표
1.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조회 출력본
1. 각 포스캡처 사진
1. 2017. 6. 21. 포스조작 영상 CCTV캡처화면
1. 2017. 6. 23. 포스조작 영상 CCTV캡처화면
1. 허위매출내역 정리표
1. 이동 저장 매체 USB 1개 재생결과

1. 매출 과장과 권리금 사기 분쟁의 쟁점

상거래상 필요한 선전, 광고, 설명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허용범위를 벗어나 법적책임이 문제되는 해당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빈번하게 문제되지만 실제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기본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고단898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독점권, 권리금, 계약분쟁, 손해배상, 영업금지, 민사소송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